case
2

스마트 워치

요약

사례명	**스마트 워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2417 (2022.02.23.)
사실관계	대만에서 SMT 공정을 통해 생산된 2개의 PCBA를 중국으로 수입한 뒤, 중국에서 PCBA와 다른 부품들을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포장하여 최종제품인 스마트 워치 생산 * SMT공정: 전자부품을 인쇄회로기판(PCB)표면에 실장·접합하는 표면실장 공정
쟁점 및 판정	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 CBP는 다음을 이유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 중국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은 비교적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수입된 물품에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에 대해 CBP는 일반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펌웨어의 개발 및 업로드가 동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국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음 • 최종제품의 기능은 스마트 워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이러한 PCBA를 생산하기 위해 대만에서 수행된 공정은 명칭, 성질 및 용도 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만큼 복잡하고 의미있으므로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Ⅱ 판정사례[2)]

사 례 명 [스마트 워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사례번호 HQ H322417 (2022.02.23)

사실관계

요청자	비공개 (대리인: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제품	제품명	• 스마트 워치
	구성	• 메인 로직 보드(MLB), 센서 보드, 디스플레이, 마이크, 스피커, 햅틱 모듈, 배터리, 실리콘 손목밴드 등
	용도	• 광범위한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춘 손목 착용형 스마트 통신 장치

제조공정

01 여러 국가산 부품을 대만으로 수입

02 대만에서 PCBA 생산 후 중국 수출

03 중국에서 최종 조립

04 미국 수출

상세공정

1. 대만 제조공정
   (1) 2개의 PCBA(메인 로직 보드, 센서 보드) 생산을 위해 대만, 독일, 필리핀, 몰타,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들을 대만으로 수입 및 조달
   (2) SMT 공정을 통해 메인 로직 보드 생산(약 3시간 소요)
   - CPU, 플래시 메모리 칩, Wi-Fi 및 블루투스 통합 회로, 고도계, 관성 측정 장치, 다양한 저항기, 서미스터, 커패시터, 인턱터, 집적 회로를 포함한 약 680~700개 부품으로 구성(대만, 독일, 필리핀, 몰타, 중국산)
   (3) SMT 공정을 통해 센서 보드 생산(약 1~2시간 소요)
   - 심박수 모니터, 저항기, 커패시터, 다이오드를 포함한 약 50~60개 부품으로 구성(대만, 독일, 필리핀, 중국산)
2. 완성된 2개의 PCBA를 포장하여 중국으로 수출

2)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가 부재하므로 관련 품목 정보 및 시장 정보 미제공

3. 중국 제조 공정

(1)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을 중국으로 수입

부품명	원산지	부품명	원산지
마이크 부품	중국산	AMOLED 셀패널	대만산
햅틱 모듈	중국산	터치 컨트롤러	대만산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산	기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부품	중국 및 말레이시아산
본체 외장	중국산		
크래들	중국산	스피커	독일, 몰타, 중국산 부품으로 구성
실리콘 손목밴드	중국산	PCBA	대만산

(2)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펌웨어 업로드, 시험 및 포장(FATP) 수행(약 2~3시간 소요)

- 특정 모듈의 조립 및 이러한 모듈을 사전에 조립 및 제작된 부품과 결합
- 운영 체제가 포함된 펌웨어 업로드(미국 및 중국이 아닌 제3국산 사용)

4. 미국 수출

쟁점사항

✔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및 분석

1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

관련 법령 검토

☑ 『Section 304(a)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a))』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19 C.F.R. §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 여부

❖ 참고 판례: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681 F.2d 778 (CCPA 1982)*

- 실질적 변형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2d 1201 (Fed. Cir. 1993)*

-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사소한 수준에 불과하여 제품의 정체성이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029 (Ct. Int'l Trade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관련 법령 및 분석

-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들이 조립되어 완제품이 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circumstances)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이루어짐
- 이때, 부품들의 원산지, 해당 국가 내에서 수행된 가공의 범위, 가공으로 인해 새로운 명칭, 성질, 용도를 가진 제품으로 변화했는지 여부, 제품 설계 및 개발에 투입된 자원, 조립 후 실시되는 검사 및 테스트 절차의 범위와 성격, 실제 제조공정에서 요구되는 기술 수준 등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어느 하나의 요소만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판정이 이루어짐

❖ 참고 판례: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및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 성질의 변화와 관련하여, 실질적 변형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나 구성품의 성질에 중대한 변경이 있어야 하며, 이때 성질의 변화를 판단하기 위해 완성품의 본질(essence)을 검토함

❖ 참고 판례: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190 F. Supp. 3d 1308, 1318 (2016)*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029-30 (Ct. Int'l Trade 1982), aff'd, 702 F.2d 1022 (Fed. Cir. 1983)*

- CBP는 해당 사안의 판정을 위해 다음의 사례를 참고함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사례 Fitbit 웨어러블 전자 스마트 기기 사례

판정 Fitbit 기기의 고유하고 완전한 기능은 여러 전자부품이 PCBA에 통합 및 탑재된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며, 개별 전자부품들은 SMT 공정을 통해 PCBA에 통합되면 더 이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 이와 더불어 진동 모터, 디스플레이, 손목 밴드 등이 포함된 하우징에 PCBA를 부착하는 최종 조립 공정은 PCBA의 기능적,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SMT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원산지임

- 기기의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가 개발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8234 (2020.06.03.)*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H303139 (2020.01.14.)*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558868 (1995.02.23.)*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735027 (1993.09.07.)*

판정 결과

☑ CBP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최종 조립, 소프트웨어 / 펌웨어 업로드, 시험 및 포장(FATP) 공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함

- 최종 조립 중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나사 조임, 접착, 가열, 롤링, 프레스, 고정 등 비교적 단순한 도구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 시간 또한 대만에서의 PCBA 제조 공정에 비해 짧으며, 특히, 마이크, 스피커, PCBA와 같은 구성품은 조립 후에도 여전히 고유한 명칭 및 용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질적 변형을 발생시키지 않음
- 소프트웨어 / 펌웨어 업로드 CBP는 일반적으로 기기의 소프트웨어/펌웨어의 업로드는 해당 소프트웨어/펌웨어가 개발된 국가와 동일한 국가에서 업로드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본 사안의 경우 펌웨어가 미국 및 중국이 아닌 제3국산이므로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이와 더불어, HQ H302801 사례를 인용하면서 최종 제품의 기능은 스마트 워치의 본질을 구성하는 PCBA에 의해 부여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만에서 PCBA가 생산되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를 대만이라고 판정함

- 명칭 대만에서는 약 700개 이상의 부품이 SMT 공정을 통해 두 개의 PCBA에 통합되고 이 과정에서 개별 전자부품들의 명칭은 메인 로직 보드 혹은 센서 보드로 변경됨
- 성질 개별 전자부품들은 PCBA로 통합되면서 새로운 물품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며, 데이터 수집 및 교환, 사용자 운동 및 활동 추적 등 스마트 워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므로 성질의 변화가 발생함
- 용도 개별 전자부품들은 PCBA로 통합되기 전에는 독립적이며 일반적인 용도의 품목으로 여러 장치에 사용될 수 있으나, 2개의 PCBA로 통합되면서 스마트 워치에 전용될 수 있는 부품으로 전환되므로 용도의 변화가 발생함

판정 결과

☑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는 SMT 공정을 통해 PCBA를 생산한 대만이므로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이 아님

결 론

✔ 최종제품의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대만임

Ⅲ 시사점

- CBP는 최종제품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PCBA를 스마트 워치의 핵심 부품으로 판단하므로, PCBA가 하나의 국가에서 생산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최종제품의 원산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음

Ⅳ 참고자료

- CBP Ruling HQ H322417 (2022.02.23.), https://rulings.cbp.gov/ruling/H322417
- CBP Ruling HQ H311606 (2021.06.16.), https://rulings.cbp.gov/ruling/H311606
- CBP Ruling HQ H302801 (2019.10.03.), https://rulings.cbp.gov/ruling/H302801
- CBP Ruling HQ H308234 (2020.06.03.), https://rulings.cbp.gov/ruling/H308234
- CBP Ruling HQ H303139 (2020.01.14.), https://rulings.cbp.gov/ruling/H303139
- CBP Ruling HQ 558868 (1995.02.23.), https://rulings.cbp.gov/ruling/558868

- CBP Ruling HQ 735027 (1993.09.07.), https://rulings.cbp.gov/ruling/735027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Texas Instruments, Inc. v. United States (1982),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8163/texas-instruments-inc-v-united-states/?q=Texas+Instruments%2C+Inc.+v.+United+States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Energizer Battery, Inc. v. United States (2016),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4327965/energizer-battery-inc-v-united-states/?q=Energizer+Battery%2C+Inc.+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